

# 과업내용서

##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2. 용어의 정의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를 “발주처”라 하고 운반 및 처리업체를 “폐기물처리업체”라 한다.

## 3. 사업의 개요

용역명	2024년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발생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용역
폐기물의 종류	비산재(지정, 03-05-01)
폐기물 보관장소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처리방법	매립(Ton-Bag)
예상 발생량	1,860톤

## 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24. 1. 1.부터 '24. 12. 31.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의 방침으로 용역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나.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된 물량을 모두 처리한 경우
- 다.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가”내지 “다”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 기간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5. 적용범위

가.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정폐기물(비산재)의 운반 및 처리

## 6. 업무책임한계

가. 폐기물처리업체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용역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체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비산재(지정)는 발주처에서 Ton-Bag으로 처리하며 모든 폐기물의 상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시행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계약단가 및 예상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단, 특례 적용시 특례를 따름)

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상의 구성원들 각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사”항의 방법에 구성원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정한다.

## 7. 과업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나.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하며, 수집·운반 시 해당지역의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여 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마.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시 계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계량은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된 계량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인 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계량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담한다.
- 바.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대장, 폐기물최종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용역수량의 증감**

- 가. 본 용역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량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나. 예정수량보다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9. 용역비 정산**

본 용역은 처리폐기물에 대한 예상발생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므로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발주처에서 확인한 증빙자료(발주처 계근표 등)에 의하여 실제 처리한 양에 따라 매월 정산한다.